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57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김상훈 · 김선교 · 이현승
진종오 · 고동진 · 이인선
성일종 · 엄태영 · 강대식
김재섭 · 조은희 · 안철수
신동욱 · 김용태 · 조승환
유영하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높은 차입비율을 활용하여 투자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투자수익을 빠르게 환수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성장가능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자본을 침탈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배당 등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자

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 등 기업 가치 제고
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함(안 제249조의12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1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에 관하여 제249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투자한 날로부터 5년간 투자

대상기업으로부터 배당, 감자, 지분의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분여받은 이익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대상기업에 출자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부채상환능력평가의 결과

⑤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9조제1항제41호의3 중 “제249조의12제2항”을 “제249조의12제4항”으로 한다.

별표 6 제9호의4를 제9호의5로 하고,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호의5(종전의 제9호의4) 중 “제249조의12제2항”을 “제249조의12제4항”으로 한다.

9의4.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평가를 받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① (생략) <u><신설></u>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전 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재산을 운용에 관하여 제249 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 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 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 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u>
<u><신설></u>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u><신설></u>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u>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투자한 날로부터 5년간 투자대상 기업으로부터 배당, 감자, 지분의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분여받은 이익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대상기업에 출자하여야 한다.</u> ④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항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부채상환능력평가의 결과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 -----
--	--

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1의2. (생략)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u>제249조의12제2항</u>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 49. (생략) ② ~ ④ (생략)	----- -----. 1. ~ 41의2. (현행과 같음) 41의3. ----- <u>제249조의12제4항</u>----- ----- ----- 42. ~ 4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